

2025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내

1 사업개요

-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금 지원

[사업추진근거]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(규칙)



2 지원대상

-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미만 중점지원)
-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지원 제외 대상

- 용자금 지원 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
-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
-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sims.go.kr>)에서 지원합계 확인
-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·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
- 단,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,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
- '25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·결정 불가

3 지원조건 및 절차

- [지원조건] 사업장당 10억원 한도, 소요비용 전액지원(부가세 별도, 고정금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)

- [지원절차]

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[기간] '24년 12월~재원소진 시까지(4,586억원)
- [방법]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우편·방문) 신청

5 지원품목

- 위험기계기구(부속품 포함)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
- 기술사업(진단·점검·컨설팅)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
- 고용노동부 및 공단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,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,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·보수

6 필수사항

[공 통] 위험성평가 등 사업주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제출

-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, 위험성평가,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중 선택

[5인이상]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신청 및 보고서 제출

[5인미만] 공단 또는 위탁기관의 기술지도(점검) 신청 및 보고서 제출



[온라인 신청 매뉴얼]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 → 산재예방시설 용자
[신청서류 다운로드]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서식모음 및 자료실 (문의: ☎ 1544-3088)

별첨 1 2025년 용자대상자 선정기준

선정항목	배점	비고										
①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⇒ <u>20점</u>	20점	※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										
②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거나 취약한 업종 • 건설업 (대업종기준) ⇒ <u>20점</u> * 건설관련 소업종(40001~40010), 건설업본사 소업종(90515) 포함 •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 (대업종기준) ⇒ <u>15점</u> •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(대업종기준) ⇒ <u>10점</u>	(최대) 20점	※ 업종 확인 - ERP-공통-사업장 정보조회										
③ 소액 용자 신청사업장 • 5천만원 미만 신청(용자신청금액 기준) ⇒ <u>20점</u>	20점	※ 용자 신청금액 기준										
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•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	10점	※ 위험성평가 인정서 제출										
⑤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• 해당 근로자 1명당 ⇒ <u>2점</u> • 장애인, 외국인 ※ 외국인근로자 : 4대보험 가입자명부 산재보험가입근로자의 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 5~8로 확인	(최대) 10점	※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※ 장애인증명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제출하는 경우 인정										
⑥ 화재 폭발 예방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장 • 내화도장 공사,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, 양압설비, 소화설비, 유해가스모니터링시스템 등	10점	※ 내화성적서, 안전인증서 - 방폭인증의 경우 안전 인증대상 방호장치 구분 부호가 "B, O"인 경우만 인정										
⑦ 전년도('24년)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"> <thead> <tr> <th>인원</th> <th>무재해</th> <th>1명</th> <th>2명</th> <th>3명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 <td>0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인원	무재해	1명	2명	3명 이상	배점	0	1	3	5	(최대) 5점	※ 접수 후 선정 시 확정통계 기준 - 사고재해자 수
인원	무재해	1명	2명	3명 이상								
배점	0	1	3	5								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•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⇒ <u>5점</u> * ①노사문화 우수(대상)기업, ②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③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, ④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⑤청년친화강소기업	5점	※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하고, 중복 해당 시 합산하지 않음										
합 계	100점											

※ 사업장간 우선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**항목 순번**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**보조금 지급결정** 사업장은 **당해연도 용자금 지원결정 불가(단, 안전동행 지원사업 제외)**

※ '25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·결정 불가

※ '25년 사업연도 중 정부정책 등 반영 과정에서 우선선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(변동 시 재안내)